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득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5632

발의연월일: 2022. 5. 17.

발 의 자: 강득구 · 권은희 · 김민철

김철민 · 송갑석 · 양경숙

양이원영・양정숙・이용빈

정태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방과후학교에 관한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초·중등교육과정 총론, 교육부 고시 제2013-7호, 제2015-74호에 따라 시행되고 있음.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상황 속에서 사교육비 총액과 사교육 참여율이 크게 증가하였지만, 방과후학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들은 '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(방과후학교 운영 및 업무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17개 시·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으로 제작하는 자료)'에서 대략적으로만 정해지고 있음.

또한 급증하는 사교육비에 대응하기 위해 방과후학교의 체계적·안 정적인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도강사에 관한 명시적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, 교육감으로 하여금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도록

함으로써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방과후학교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높이고자 함(안 제22조의2 신설 등).

초 ·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초·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제2절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2조의2(방과후학교 지도강사) ① 학교의 장은 제23조의2에 따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지도할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전직교원, 지역사회 인사, 외국인 등을 방과후학교 지도강사(이하 "지도 강사"라 한다)로 채용할 수 있다.
 - ② 지도강사는 교육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의 지도·감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지도강사의 자격, 채용에 필요한 절차 및 채용계약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3조의2(방과후학교의 운영) ① 학교의 장은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휴업일 중에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(초등 학교의 경우 돌봄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포함한다. 이하 "방과후 학교"라 한다)을 운영할 수 있다.
 - ② 교육부장관은 방과후학교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,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

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.

- ③ 교육감은 방과후학교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이 포함된 방과후학교의 운영 지원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제23조의3(방과후학교 지원센터) ① 교육감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방과후학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방과후학교 지원센터(이하 "지 원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 -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개발 · 보급
 - 2.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소개 및 홍보
 - 3. 지도강사의 연수
 - 4. 방과후학교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
 - 5.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
 - ③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- 제32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3의2.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<신 설></u>	제22조의2(방과후학교 지도강사)
	① 학교의 장은 제23조의2에
	따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
	지도할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
	인정하는 전직교원, 지역사회
	인사, 외국인 등을 방과후학교
	지도강사(이하 "지도강사"라 한
	다)로 채용할 수 있다.
	② 지도강사는 교육 관계 법령
	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의 지도
	•감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
	여야 한다.
	③ 제1항에 따른 지도강사의
	자격, 채용에 필요한 절차 및
	채용계약의 내용 등에 필요한
	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u><신 설></u>	제23조의2(방과후학교의 운영) ①
	학교의 장은 정규학습시간 종
	료 후 또는 휴업일 중에 학생
	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교육
	프로그램(초등학교의 경우 돌
	봄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포
	함한다. 이하 "방과후학교"라

<신 설>

한다)을 운영할 수 있다.

- ② 교육부장관은 방과후학교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, 교육감은 교육 부장관이 정한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.
- ③ 교육감은 방과후학교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이 포함된 방과후학교의 운영 지원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23조의3(방과후학교 지원센터)

- ① 교육감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방과후학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방과후학교 지원센터(이하 "지원센터"라 한다)를 설치・운영하여야 한다.
-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1. <u>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및 교</u> 육자료 개발·보급
- 2.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소개및 홍보
- 3. 지도강사의 연수

4. ~ 14. (생 략) ②·③ (생 략) ② • ③ (현행과 같음)